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Q&A

2023. 5

목 차

운영협약 단계	1
학과개설 준비 단계	11
학생선발 단계	16
학과운영 단계	21
학과폐지 단계	32

운영협약 단계

운영협약 단계

과정	① 위탁교육 의뢰 및 협의
Q1	공인중개사협회, 사회복지사협회 등도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3조의 '산업체등'의 범위에 해당하는가?
	<p>재교육형 계약학과는 산업인력 양성과 산학협력 활성화를 취지로 하는 「산학협력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 산업체가 소속 직원의 재교육을 위하여 경비를 부담하며 대학에 교육을 의뢰하여 개설하는 학과이다.</p> <p>공인중개사협회, 사회복지사협회 등의 협회는 소속 자격자의 자질 향상 및 복지 증진 등 구성원들의 권리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직업인들의 조직이므로, 조직의 구성이나 목적을 고려하였을 때, 생산 활동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체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p>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3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과정	① 위탁교육 의뢰 및 협의
Q2	대학의 경우 '산업체' 입장에서 대학의 소속 직원들의 재교육을 위하여 스스로 계약학과를 설치할 수 있는가?
	계약학과는 산업체의 요구와 산업교육기관의 수용이라는 쌍방의 의사에 따라 설치되는 것인 바, 상대방 없이 대학 스스로 계약학과를 설치할 수는 없다.
	✓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3조,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과정	① 위탁교육 의뢰 및 협의
Q3	외국에 있는 산업체와 계약학과를 설치할 수 있는가?
	<p>계약학과 설치 근거 법령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학협력법)」 제1조는 같은 법의 목적을 창의적인 산업인력을 양성하여 지역 사회와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p> <p>또한, 같은 법 제8조는 대학이 산업체등과 계약학과를 설치할 때 권역별로 학과를 설치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또한,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3조에서 산업체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계약학과를 설치할 수 있는 산업체는 국내에 위치한 산업체등을 말하며, 국내에 위치하지 않는 외국 기업이 국내 대학과 계약학과를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학협력법 제1조, 8조 ✓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3조

과정	① 위탁교육 의뢰 및 협의
Q4	계약학과 설치 시, 학과 명칭은 기존 학과(모체학과)와 동일하게 할 수 있는가?
	「산학협력법 시행령」 제8조에서 계약학과 명칭은 학칙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계약학과 명칭은 모체학과와 혼동을 고려할 때 모체학과와 구분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학협력법 시행령 제8조제2항 ✓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11조제1항제1호

	<p>사례</p>
	<p>유아교육 기 자격 취득자를 대상으로 편입과정을 계약학과로 운영 시 명칭에 “교육학과”를 명시 할 수 있는가?</p>
	<p>「고등교육법」 제41조는 “대학에는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원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과(이하 "교육과"라 한다)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p> <p>이에 따라 ‘교육학과’라는 명칭은 교원을 신규로 양성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쓰이며 양성된 교원을 재교육시키는 경우에는 ‘교육학과’ 명칭을 담당 부서의 승인 없이 사용할 수 없다.</p>

과정	① 위탁교육 의뢰 및 협의
Q5	계약학과를 설치·운영 할 경우에도 「대학설립·운영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는가?
	<p>계약학과는 산업체등의 다양하고 특수한 인력양성 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써 탄력적인 설치·운영을 위해 「대학설립·운영 규정」상 설치기준을 완화하고 있다.</p> <p>대학의 교사 및 교지는 설립 주체의 소유이어야 하나 계약학과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사업자 단체 및 직능 단체가 제공하는 시설에서 운영하도록 소유주체를 완화하였으며, 학과정원 등의 증설·증원 시 추가로 확보하여야 할 교사, 교지, 교원을 확보하지 않아도 가능하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설립·운영 규정 제2조제6항제4호, 제2조의3제3항

과정	① 위탁교육 의뢰 및 협의
Q6	계약학과의 모집정원은 어떻게 정해야 하는가?
	<p>「산학협력법 시행령」 제8조제5항에 의거하여 계약학과 등의 학생 수 또는 학생 정원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1조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및 제30조에도 불구하고 그 학생 수 또는 학생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p> <p>「산학협력법 시행령」 제8조제5항제1호(영 제8조의2에 따른 계약정원 포함) 및 제2호에 따른 학생 정원은 각각 산정하되, 해당 학년도 학부와 대학원의 입학정원을 통합하여 산정한다.</p> <p>「산학협력법 시행령」 제8조제5항제2호에 따른 해당 학년도 입학정원의 100분의 50 범위 내의 모집정원 확대는 산업체등의 인력 수요의 시급성·중요성,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승인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학협력법 시행령 제8조제5항, 제8조의2 ✓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15조

과정	① 위탁교육 의뢰 및 협의
Q7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2조(용어의 정의)에서 ‘계약정원’은 무엇을 말하는가?
	「산학협력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르면, 산업교육기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첨단산업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로서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학과·학부를 우선 활용하는 경우에는 그 학과·학부의 학생 수 또는 학생 정원 중 일부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과 계약한 학생 수 또는 학생 정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때 계약한 학생 수 또는 학생 정원을 “계약정원”이라고 한다.
	산학협력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

과정	① 위탁교육 의뢰 및 협의
Q8	계약학과를 「산학협력법 시행령」 제8조의2의 ‘계약정원’으로 운영할 경우 학생정원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계약정원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1조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및 제30조에도 불구하고 그 학생 수 또는 학생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정원은 우선 활용하려는 학과·학부의 해당 학년의 전체 입학 학생 수 또는 전체 입학 학생 정원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산학협력법 시행령 제8조의2제2항

과정	① 위탁교육 의뢰 및 협의
Q9	산업교육기관(대학)의 계약학과 학생 정원 산정에 있어서 대학과 대학원의 입학정원은 어떻게 되는가? 또한 대학원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가?
	<p>계약학과 운영을 위한 학생 정원의 산정은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15조제1항에 따라 채용조건형과 재교육형을 각각 산정하되, 해당 학년도 학부와 대학원의 입학 정원을 통합하여 산정한다고 되어 있다. ‘해당 대학원의 입학정원’은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의 입학정원’을 모두 포함할 수 있다.</p>
	<p>산학협력법 시행령 제8조제5항제1호, 제2호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15조제1항</p>

과정	① 위탁교육 의뢰 및 협의
Q10	같은 산업교육기관(대학) 내에서 두 개 이상의 일반학과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융합 또는 공동형 계약학과를 설치할 경우라도 모체학과는 하나만 지정해야 하는 가?
	<p>‘모체학과’란 계약학과 교육과정 구성, 수업운영 등을 담당하는 학과 또는 전공으로 계약학과 설치의 기본 토대가 되는 정원 내의 일반학과 또는 전공을 말한다. 개정된 운영규정 제2조2호에 따르면 정원 내 복수의 일반학과(모체학과)가 계약학과 교육과정을 융합하여 개발·운영하거나 공동으로 학과를 설치·운영하는 형태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 융합 또는 공동형 계약학과의 모체학과 복수지정을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설치 계약학과에 참여하는 모든 학과를 대상으로 2개 이상의 모체학과를 지정하고 관리할 수 있다.</p>
	<p>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2조제2호</p>

과정	① 위탁교육 의뢰 및 협의
Q11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산업교육기관’은 무엇을 말하는가?
	<p>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원격대학, 그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 중 「산학협력법 시행령」 제2조제2항 각호의 학교를 말한다.</p> <p>다만, ‘각종학교’는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나 「산학협력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서 학위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인정되지 아니한 각종 학교는 해당하지 않는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학협력법 제2조제2호다목 ✓ 산학협력법 시행령 제2조제2항 ✓ 고등교육법 제2조제7호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5조제5호 ✓ 계약학과설치·운영 규정 제2조제1호

과정	① 위탁교육 의뢰 및 협의
Q12	계약학과에서 설치·운영할 수 있는 학위과정은 어떤 것이 있는가?
	<p>산업교육기관은 「산학협력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이하 “계약학과등”이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계약학과등을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그 산업교육기관에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인정된 고등학교과정, 전문학사학위과정, 학사학위과정, 석사학위과정 또는 박사학위과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교육기관 중 고등기술학교와 학위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인정되지 아니한 「고등교육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각종학교는 고등학교과정 및 학위과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약학과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고등교육법 제2조제7호 산학협력법 시행령 제8조제1항</p>

과정	① 위탁교육 의뢰 및 협의
Q13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산업체’은 무엇인가?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3조1항에서 산업체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또한, 제3조2항에서 제1항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국가경쟁력 강화·지역특화산업의 양성을 위하여 「산학협력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5호에 따른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5인 미만 사업장도 계약학과 설치·운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다. 다만, 종교단체, 노동조합, 시민운동단체, 지방의회, 유흥 주점업 등은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산업체등에 포함되지 않는다.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3조

과정	② 산업체-산업교육기관 간 운영협약 체결
Q14	산업체-산업교육기관 간 운영협약 체결 시 설치 계약학과에 대한 ‘설치 운영기간’은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
	「산학협력법 시행령」에서 계약학과 설치 운영기간은 계약학과등의 설치·운영기간은 계약학과등에 재학하는 학생이 학위를 취득하거나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 이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계약학과의 ‘설치 운영기간’에 관한 사항은 산업교육기관과 산업체 간 운영계약서와 학교규칙에 기재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산학협력법 시행령 제8조제7항 제8조제2항제8호, 제9항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11조제1항제3호, 제14조제3항, 제25조제1항

과정	② 산업체-산업교육기관 간 운영협약 체결
Q15	계약학과를 학교가 아닌 다른 곳을 교사(校舍)로 활용할 수 있는가?
	<p>“이동수업”이란 「고등교육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학칙으로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수업 방법으로 교수가 산업교육기관 소재지 밖의 장소로 학생들을 찾아가 일정한 장소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계약학과는 학교 내에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교육기관은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따라 해당 산업체등의 소유 또는 임차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교사(校舍)로 활용할 수 있다.</p> <p>또한, 산업교육기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및 지역 특화산업의 양성을 위하여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원하여 계약학과를 설치한 경우와 제12조에 의한 공동계약 및 3자 계약의 경우에는 그 계약학과에 참여한 타 기업, 관련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사업주 단체 소유 또는 임차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p> <p>이동 수업에 관한 사항은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20조(이동수업)과 관련한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11조제1항제6호 ✓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12조제2항 ✓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20조

과정	② 산업체-산업교육기관 간 운영협약 체결
Q16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12조의 ‘3자 계약에 의한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재정지원금 등’을 필요경비로 산정할 수 있는가?
	<p>「산학협력법 시행령」 제8조제6항 ‘계약학과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의 부담금은 제2항제5호에 따른 계약학과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고 되어 있다.</p> <p>「산학협력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계약학과에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산업체등과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학생 납부금 및 산업체 부담금과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12조의 제3자 계약에 의한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재정지원금 등으로 충당하도록 하고 있다.</p> <p>따라서, 산업체등이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12조(공동계약 및 3자 계약에 의한 계약학과 설치)에 따라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할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재정지원금 등을 필요경비로 산정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학협력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5호, 제8조제6항, ✓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12조제2항 ✓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27조제1항

과정	③ 교육과정 개발
Q17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방법은 기존 학과와 동일 또는 유사하게 할 수 있는가?
	<p>계약학과의 교육과정은 산업체의 특성을 반영하여 산업체의 요구나 의뢰한 사항을 반영하여 편성하여야 하며, 산업교육기관은 산업체등과 교육과정을 연 1회 이상 협의하고 산업체등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대학에서 일방적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다. 다만,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산학협력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서 계약으로 정하여 학칙에 기재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산업체가 기존 학과와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는데 동의할 경우에는 가능하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학협력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2호 ✓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17조제1항

과정	③ 교육과정 개발																																										
Q18	산업체 소속 임원을 겸임교수 또는 시간강사로 위촉할 수 있는가?																																										
	<p>계약학과는 산업체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거나 소속 근로자의 재교육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므로 산업체가 요구하거나 의뢰한 내용을 바탕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하여야 한다.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산업체 소속 임직원 중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겸임교수 또는 강사로 위촉하여 강의를 하게 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17조제1항, 제3항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학력</th> <th colspan="3">대학졸업자·동등자격자</th> <th colspan="3">전문대학졸업자·동등자격자</th> </tr> <tr> <th>연구실적 /경력연수</th> <th>연구실적 연수</th> <th>교육경력 연수</th> <th>계</th> <th>연구실적 연수</th> <th>교육경력 연수</th> <th>계</th> </tr> </thead> <tbody> <tr> <td>교수</td> <td>4</td> <td>6</td> <td>10</td> <td>5</td> <td>8</td> <td>13</td> </tr> <tr> <td>부교수</td> <td>3</td> <td>4</td> <td>7</td> <td>4</td> <td>6</td> <td>10</td> </tr> <tr> <td>조교수</td> <td>2</td> <td>2</td> <td>4</td> <td>3</td> <td>4</td> <td>7</td> </tr> <tr> <td>조교</td> <td colspan="6">근무하려는 학교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학력이 있는 자</td> </tr> </tbody> </table> <p>* 비고 :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 중 어느 하나가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연구실적 연수와 교육경력연수의 합계가 해당 기준을 충족하면 자격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p>	학력	대학졸업자·동등자격자			전문대학졸업자·동등자격자			연구실적 /경력연수	연구실적 연수	교육경력 연수	계	연구실적 연수	교육경력 연수	계	교수	4	6	10	5	8	13	부교수	3	4	7	4	6	10	조교수	2	2	4	3	4	7	조교	근무하려는 학교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학력이 있는 자					
학력	대학졸업자·동등자격자			전문대학졸업자·동등자격자																																							
	연구실적 /경력연수	연구실적 연수	교육경력 연수	계	연구실적 연수	교육경력 연수	계																																				
교수	4	6	10	5	8	13																																					
부교수	3	4	7	4	6	10																																					
조교수	2	2	4	3	4	7																																					
조교	근무하려는 학교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학력이 있는 자																																										

학과개설 준비 단계

학과개설 준비 단계

과정	⑤ (최초 개설) 계약학과 설치계획 신고
Q1	계약학과 설치 신고는 언제, 어떻게 하는가?
	<p>계약학과를 신규로 설치할 경우에는 대학과 산업체 간 “계약학과 설치·운영 계약” 체결일 2주 전까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계약학과 설치 계획 신고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10조제1항</p>
	<p>✓ <첨부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학과등의 설치·운영계획서 1부 * 학교규칙 개정안 1부 * 계약학과 등의 운영세칙안(별도로 정한 경우에 한한다) 1부 * 계약서(안) 1부 * (예외 운영사항이 있는 경우)교육부 심의 또는 대학의 운영위원회 승인 공문 1부(전공심화과정, 온라인학위과정, 이동수업 등)

과정	⑥ 계약학과 설치·운영계약 체결
Q2	산업체가 계약학과 설치 시 학생의 성적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에만 산업체 부담금을 지원한다는 등의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가?
	<p>계약학과 운영에 따른 산업체 부담금은 「산학협력법 시행령」 제8조 제6항에 의거하여 계약학과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의 부담금은 제2항제5호에 따른 계약학과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제6항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산업교육기관(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대학으로 한정한다)이 산업체등과의 계약에 따라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첨단산업 분야의 계약학과등(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계약학과등을 말한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그 산업체등의 부담금은 계약학과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할 수 있다. 제7항에 따라 산업체등의 부담금을 계약학과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하는 경우 학생이 부담하는 수업료 등 납부금은 계약학과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p> <p>학교와 산업체가 계약을 체결하면 산업체는 체결된 내용(산업체 부담금 납부 기준 등)을 준수해야 하므로, 산업체가 성적 등 기타 기준을 내세워 부담금 납부 여부를 매학기 마다 별도로 결정할 수 없다.</p> <p>산업체에서 학생들의 성실한 수업 참여를 독려하고자 한다면 법에서 정한 부담금 비율보다 초과하는 금액을 일정 조건 충족 시 장학금 등 명목으로 학생에게 추가 지급하고, 미충족 시에는 법에서 정한 부담금만 지원하는 방안을 대학과 협의의 통하여 시행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학협력법 시행령 제8조제2항, 제6항, 제7항, 제8항 ✓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27조

과정	⑥ 계약학과 설치·운영계약 체결
Q3	산업체 부담경비의 납부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p>산업교육기관은 「산학협력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6항, 제7항, 제8항에 따라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서 산업체 부담 교육경비를 납부하도록 학칙으로 정하고, 이를 산업체와의 ‘계약학과 설치 운영계약서’ 상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p> <p>산업교육기관은 ‘산업체등과 학생 부담분’은 학기 단위로 결정하여 ‘학생’과 ‘산업체등’에 따로 청구하여야 한다. 산업교육기관은 산업체등의 매 학기 부담금 납부 사실을 법인명의 계좌 입금, 예산 편성 내역 등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산업체의 교육경비 납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p> <p>산업체 부담금은 계약 당사자인 산업체가 직접 산업교육기관에 납부해야 하며, 법적 부담 의무가 없는 학생에게 선납하게 하고 추후 학생에게 지급하여서는 안 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학협력법 시행령 제8조제2항, 제6항, 제7항, 제8항 ✓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27조

과정	⑥ 계약학과 설치·운영계약 체결
Q4	산업체-산업교육기관 간 협약을 통해 '계약학과 설치·운영 계약서(운영 계약서)' 작성 시 기재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가?
	<p>산업체와 대학은 계약학과 설치를 위한 협의 후에 상호 간의 역할과 책임을 정하고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협약을 체결하고 운영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때 '설치·운영 계약서(운영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계약학과의 명칭, 학위의 종류 및 모집 단위별 모집정원 2. 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 3. 설치 운영 기간에 관한 사항 4.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학생 및 산업체등의 <u>부담금</u>¹⁾에 관한 사항 5. 재학 중 계약학과 운영 기간 종료 전 계약학과 폐지, 휴학 복귀 후 계약학과 폐지, 운영 기간 종료 후 졸업하지 못한 경우 등의 학생에 대한 학사 운영에 관한 사항 6. 학교 밖의 장소에서 이동수업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장소에 관한 사항 7. 산업체 부담금 납부 확인에 관한 사항 8. 산업체 부담금 납부 기한 및 미납 시 조치사항 9. 도서관 등 교내시설 이용 및 행정서비스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계약학과 운영에 있어 필요한 사항
	<p>✓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11조제1항</p>

1) 「고등교육법」 제11조제1항은 등록금(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학생 부담금으로 규정하고 있고, 「산학협력법 시행령」 제8조 ⑥항에서는 학생 부담금을 별도 규정하고 있어 '등록금' 문구를 사용하면 안됨

학생선발 단계

학생선발 단계

과정	⑦ 모집요강
Q1	산업체가 산업교육기관(대학)에 '계약학과 설치 요구 전'에 대학이 학생을 직접 모집할 수 있는가?
	<p>산업교육기관이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경우는 산업체가 특별한 교육 과정이나 교육을 산업교육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이다.</p> <p>따라서, 대학에서 일방적으로 계약학과를 설치한 후(또는 기존에 설치된 계약학과의) 입학원서에 산업체등과의 협약서 등을 첨부하도록 하면서 학생을 직접 모집하는 행위 등은 계약학과 제도의 설립 취지와 다르며, 위법하게 운영하는 것이다.</p>
	-

과정	⑦ 모집요강
Q2	계약학과의 학생 선발은 신입학과 편입학 모두 가능한가?
	<p>「산학협력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서 계약학과의 학생 선발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도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학칙에서 정한 교육과정 운영에 따라 당해 대학에 설치된 계약학과에 신입학 또는 편입학 모두 가능하다.</p> <p>다만, 편입학의 경우 모집요강에 의해 선발하되, 전형 방법은 계약 체결에 의하여 따로 정한다.</p> <p>편입학 전형은 「고등교육법」 등 관련 규정의 범위 내에서 각 대학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의 설정을 통해 자율적으로 운영 가능하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학협력법 시행령 제8조제2항 ✓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16조3항

과정	⑦ 모집요강
Q3	계약학과 신규 설치 후 신입생이 3학년에 도달하기 전에 편입생을 먼저 모집할 수 있는가?
	<p>「산학협력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계약학과의 입학·편입학은 「고등교육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34조 및 제35조를 준용하여 학칙으로 정하여 선발할 수 있다. 편입생 모집은 결원 발생 시 학칙으로 정한 정원 범위 내에서 모집할 수 있으므로, 일반 4년제 학위과정을 설치한 후 3학년 편제 완성 전에 편입을 모집할 수 없다. (1학년, 2학년까지만 편제가 완성된 상황(3학년 결원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3학년 편입은 모집 불가함)</p> <p>다만, 학칙에 편입정원을 명시한 경우에는 신입생과 편입생을 구분하여 모집할 수 있다.</p>
	<p>✓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16조</p>

과정	⑧ 원서접수, 서류전형 및 면접고사 등
Q4	입학자격의 확인 방법은 무엇이 있는가?
	<p>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14조의 입학자격에 관한 규정에서 정의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계약학과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은 「고등교육법」 제33조를 준용해야 한다. 특히 「산학협력법」 제8조제1항제2호의 계약학과인 경우 산업체등의 소속 직원에 한해 입학 자격이 부여되며,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고용된 대표자(4대 보험 가입자)를 포함한다. 따라서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하려는 사람의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증명서 및 원천징수영수증(신규입학의 경우 근로지급조서나 근로소득원천징수부로 대체 가능) 등을 활용하여 입학 자격 및 재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교육법 제33조 ✓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1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학협력법 제8조제1항제2호의 계약학과 재학생의 경우, 산업교육기관은 가을학기 시작 전월까지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을, 매 학기 시작 전월까지 4대 보험 가입증명서 및 재직증명서를 통해 재학생의 재직 현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근로자는 재직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으나 민간 산업체 소속 직원(근로자)은 반드시 4대 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전체) 가입 확인 증명서와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재직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과정	⑧-2 원서접수, 서류전형 및 면접고사 등
Q5	석사 및 박사과정의 경우 '졸업 후 10개월 이상'의 재직요건은 어떻게 되는가?
	<p>산학협력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문학사 및 학사과정의 계약학과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고등교육법」 제33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고등학교 졸업일 다음 날부터 입학일을 기준으로 산업체등에서 10개월 이상 근무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p> <p>'졸업 후 10개월 이상' 재직요건은 전문학사학위과정과 학사학위과정에 한하며, 석사, 박사과정의 경우는 이러한 재직요건과 무관하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14조제1항, 제2항

과정	⑧-2 원서접수, 서류전형 및 면접고사 등
Q6	산업체 대표자에 대한 계약학과 참여 자격은 어떻게 되는가?
	<p>계약학과(재교육형)의 경우 산업체등의 소속 직원에 한해 입학 자격이 부여되며,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고용된 대표자(4대 보험 가입자)를 포함한다. 4대 보험 가입의 확인은 '사업자 가입 명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14조제5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학생보험 만기, 가입연령 상회(연령 제한) 등으로 특정 보험에 가입되지 않을 경우는, 별도 증빙 가능 ✓ 비영리 법인 등의 고용된 대표자라 할지라도 4대 보험에 모두 가입되어 있어야 함

학과운영 단계

학과운영 단계

과정	⑩ (변경발생) 계약학과 운영 변경 신고
Q1	‘계약학과 운영변경 신고’는 어떤 경우에 진행하는가?
	<p>계약학과 설치계획 신고 이후 계약학과 운영 시 주요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약학과 운영변경 신고서”를 작성 후 제출하여야 한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모체학과 변경, 학생정원 변경, 계약기간 변경, 외부학습장 사용 여부 변경, 계약학과 경비부담 비율 변경, 참여산업체 변경 등이다.</p> <p>아울러, 변경 신고 기한은 매 학년도 시작 2주 전까지로 교육부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10조제2항</p>
	<p><첨부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공문 1부 * 계약학과등 설치·운영 변경 신고서 1부 * 기존 계약학과 설치운영 계획 신고서 1부 * 학교규칙 개정안 1부 * 계약학과 등의 운영세칙안(별도로 정한 경우에 한함) 1부 * 계약서안 1부
과정	⑪ 교육과정 운영(출석수업, 원격수업, 현장실습수업 등)
Q2	계약학과 운영 시, 운영위원회를 꼭 구성해야 하는가?
	<p>「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24조 제1항과 제2항은 계약학과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산업교육기관에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계약학과 운영위원회는 계약학과 운영에 관련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것이다. 운영위원회 구성은 ‘계약학과 운영계약서’를 통해 계약을 맺은 산업체 관계자 및 학생을 합한 인원이 1/3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해당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의 중요사항을 학칙으로 정하여야 한다.</p>
	<p>✓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24조</p>

과정	⑪ 교육과정 운영(출석수업, 원격수업, 현장실습수업 등)
Q3	계약학과 운영 시, 전임 교원의 비율은 어떻게 하는가?
	계약학과 운영 시 수업의 질 보장을 위해 산업교육기관의 전임교원 및 산학협력 중점교수는 매 학년도 계약학과 전체 교육과정의 30% 이상 수업을 담당하여야 한다. 이때 수업은 지도교수가 학점을 부여하는 학교 내 수업은 물론 현장훈련수업 등을 모두 포함한다.
	✓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17조제4항

과정	⑪ 교육과정 운영(출석수업, 원격수업, 현장실습수업 등)
Q4	계약학과 재학 중 일반휴학이 가능한가?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23조는 계약학과의 학사관리에 대해 정하고 있다. 대학은 학사 운영에 관하여 자율권을 가지고 있고, 계약학과는 대학과 기업의 계약학과 설치·운영 계약에 따라 설치되는 학과이므로, 군 휴학과 일반 휴학은 계약으로 합의하고 학교 규칙(학칙)에 반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일반휴학 및 군 휴학도 학위과정 중의 학적 상태이므로 모두 계약학과 운영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고려하여 계약학과 설치·운영 기간을 정하여야 할 것이다.
	✓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23조

과정	⑪-2 교육과정 운영(출석수업, 원격수업, 현장실습수업 등)
Q5	현재 계약학과(재교육형)에 재학하고 있는 상황이며, 타 학과로 전과가 가능한가?
	계약학과에서 일반학과로의 전과는 불가하다.
	✓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17조제1항

과정	⑪-2 교육과정 운영(출석수업, 원격수업, 현장실습수업 등)
Q6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의 제26조제1항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우에는 입학의 취소 또는 제적 처리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만약, 정년퇴직의 경우도 계약기간 만료에 포함되어 학위를 부여할 수 없고 제적처리 해야 하는가?
	<p>해당 규정은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의 ‘퇴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소속 직원의 재교육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계약학과의 목적에 비추어 정년퇴직도 넓은 의미의 계약기간 만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운영계약 체결 시 해당 학생의 ‘근무 기간’ 등의 다양한 사항을 감안하여 운영계약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14조제3항 ✓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26조제1항

과정	⑪-2 교육과정 운영(출석수업, 원격수업, 현장실습수업 등)
Q7	산업교육기관이 계약학과와 관련하여 현장실습수업 및 현장훈련수업(OJT; On the Job Training)을 진행하기 위해 갖추어야 요건은 무엇인가?
	<p>산업교육기관은 산학협력법 제8조제1항제1호의 계약학과를 향후 계약한 산업체등에 종사하는데 필요한 지식·기술·태도를 습득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제22조의 현장실습수업과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규정(교육부 고시)」에 따라 실습학기제를 운영할 수 있다.</p> <p>산업교육기관은 산학협력법 제8조제1항제2호의 계약학과가 소속 직원의 재교육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현장훈련(OJT, On the Job Training)수업을 실시할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 운영하여야 한다. 현장훈련수업은 소속 직원의 산업체등에서의 재직경력, 근무시간 등을 기준으로 하거나 합격·불합격제(Pass/Fail, 과락제)로 학점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업 현장교수 및 산업교육기관 지도교수의 지정 2. 현장훈련수업 교육계획 3. 학습일지, 학습활동서, 과제물 등의 작성·제출과 관리를 위한 학습관리시스템(LMS, Learning Management System)의 구축 4. 해당 산업교육기관의 지도교수에 의한 평가 및 학점부여 5. 기타 현장훈련수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교육법 제22조 ✓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교육부 고시) ✓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21조

과정	⑪-2 교육과정 운영(출석수업, 원격수업, 현장실습수업 등)
Q8	재교육형 계약학과에 '대학생 현장실습수업학기제'를 운영할 수 있는가?
	<p>교육부고시 제2021-33호 「대학생 현장실습수업학기제 운영규정」에 따르면 법 제11조의3 및 영 제13조의2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수업 방법 중 '현장실습수업 수업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대학생 현장실습수업학기제 운영규정」 제6조는 '현장실습수업학기제 불인정 기준 등'을 명시하고 있는데 제6조제2호 '실습기관과 학생 간 취업(조기취업 포함), 근로, 인턴, 아르바이트 등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하기로 확정된 경우'는 불인정 기준에 해당한다. 재교육형 계약학과는 소속 직원을 위하여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취업에 해당하므로 '대학생 현장실습수업학기제'를 운영할 수 없다.</p> <p>다만,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혼합형 계약학과의 '채용조건형 교육과정' 단계의 경우 '대학생 현장실습수업학기제'는 운영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21조 ✓ 대학생 현장실습수업학기제 운영규정 제6조제2호

과정	⑪-2 교육과정 운영(출석수업, 원격수업, 현장실습수업 등)
Q9	계약학과에서 온라인 학위과정을 운영하고자 할 때의 심의는 어떻게 진행하여야 하는가?
	<p>「대학 등의 원격수업 운영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계약학과도 온라인 학위과정을 운영하고자 할 때는 이 규정을 준용하여 세부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고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등의 원격수업 운영 규정(교육부 훈령) ✓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19조

과정	⑫ 자체점검 실시
Q10	계약학과를 설치하고 운영할 경우 산업교육기관(대학)은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는데, 언제, 어떻게, 어떤 항목을 대상으로 진행하는가?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하는 산업교육기관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학과명, 재학생 및 계약체결 대상 산업체등의 현황을 포함한 자체점검결과보고서등을 매년 5월 말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13조

과정	⑭ 교육과정, 수업방식 학생만족도, 학생의 학업성취도 통보
Q11	계약학과 운영 시, 산업교육기관이 학생이 소속한 산업체에 알려야 할 사항이 있는가?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산업교육기관은 매학기 종료 시, 교육과정, 수업방식, 학생만족도, 학생의 학업성취 등을 산업체에 알려야 한다.
	✓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23조제2항

과정	⑤-2 퇴직에 따른 학생보호 [재교육형 계약학과]
Q12	계약학과 학생이 계약 산업체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타 산업체 또는 본인 부담으로 학적을 유지할 수 있는가?
	<p>계약학과는 산업체 소속 근로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산업체 교육경비 부담을 전제로 계약에 따라 설치되는 제도이다.</p> <p>학생이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퇴직한 경우에는 당해 산업체 소속 직원의 신분이 상실되어 계약 적용 대상이 되지 못하므로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26조제1항’에 의거 입학을 취소하거나 제적 처리한다. (계약학과 설치·운영의 전제인 대학과 산업체와의 계약이 없어진 상태이므로, 비록 타 산업체나 본인이 비용을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학적을 유지할 수 없음)</p>
	<p>✓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26조제1항</p>

과정	⑤-2 퇴직에 따른 학생보호 [재교육형 계약학과]
Q13	계약학과 협약이 되어 있는 산업체가 모회사에 분할 합병이 되었고 이 경우 기존의 모회사이자 현재 소속 산업체가 계약학과 협약을 체결하여 산업체 부담금을 승계할 경우, 학적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한가?
	<p>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퇴직하여 6개월 이내 같은 종류 업계(표준산업 분류의 중분류 기준) 또는 같은 직무(표준직업분류의 중분류 기준)에 이직한 경우, 학생 신분의 유지가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이직한 산업체가 학생이 다니고 있는 계약학과와 협약이 체결되어 있고 산업체 부담금 납부 의사를 표명한 경우 산업체 부담금의 승계가 가능하다.</p> <p>해당 기존 업체가 분할합병에 의해 모회사로 편입된 것은 비자발적 퇴직의 사유로 볼 수 있으며, 또 분할합병 후 현재 재직 중인 모회사가 산업체 부담금에 대해 납부 의사가 있고 기존 산업교육기관과 계약학과 운영계약을 체결한다면 산업체 부담금 승계도 가능하다.</p>
	<p>✓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26조제2항</p>

과정	㉕-2 퇴직에 따른 학생보호 [재교육형 계약학과]
Q14	<p>산업체의 도산, 구조조정 등으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의 비자발적 퇴사나 임금체불, 잦은 휴업(휴직), 사업장 이전, 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의 전근 등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 학적 유지 등 학생보호 조치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p>
	<p>질 의한 사유에 따른 비자발적 또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 기본적으로 학생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계약학과 운영 기간 내 이수해야 할 학점의 100분의 50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며, 학칙 및 운영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학과·학부(모체학과)에서 잔여기간의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학생 부담금은 계약체결 시 운영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p> <p>만약, 100분의 50 미만을 이수했을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종류 업계(‘표준산업 분류’의 중분류 기준) 또는 같은 직무(‘표준직업분류’의 중분류 기준)에 취업하여야 한다.</p> <p>학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퇴사자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사실 통지서’ 등 고용보험공단 발급 서류를 통해 퇴직 사유를 확인하여야 한다.(산업체에서 ‘비자발적 퇴사자’라는 확인서를 대학에 제출하였으나, 고용보험 서류 확인 결과 ‘자발적 퇴직’으로 신고된 사례가 있음)</p>
	<p>✓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26조제2항</p>

과정	⑤-2 퇴직에 따른 학생보호 [재교육형 계약학과]
Q15	산업체(재직 기업)의 지원을 받아 계약학과 수료까지 완료하고 이직을 할 경우 학생신분 유지가 가능한가?
	<p>계약학과는 「산학협력법」 제8조, 영 제8조를 근거를 둔 제도로써 산업체 수요에 의한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해 비용 부담을 조건으로 대학과 기업이 계약에 의해 특별한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는 제도이다.</p> <p>산업체 맞춤형 인력양성과 공급으로 인한 수혜자가 산업체라는 점에서 산업체가 필요경비를 부담하는 것이며, 산업체의 지원을 받아 계약학과를 이수한 학생은 산업체로 복귀하여 향상된 직무능력을 발휘하여 ‘산업체의 발전에 기여’라 하는 것이 제도 운영의 기본 취지이다. 이러한 계약학과의 근간을 유지하기 위해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26조 제1항에 의거하여 이와 같은 상황은 학생 본인의 자발적 퇴사로 보여진다. 따라서 수료 후, 졸업 전 이직을 할 경우 입학의 취소 또는 제적 처리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26조제1항

과정	⑤-2 퇴직에 따른 학생보호 [재교육형 계약학과]
Q16	본인은 계약학과에 지원하여 합격통지를 받고, 개인부담금까지 등록금을 납부한 상황에서 대학 입학 전에 기업이 폐업되었다. 입학 전인 상태라도 재학 중인 학생과 동일하게 학적을 유지할 수 있는가?
	<p>기존에 계약학과에 합격하여 재학 중이라면 산업체의 도산, 구조조정 등으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에는, 학칙 및 ‘운영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학과학부에서 잔여기간의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학생 부담금은 계약 체결 시 ‘운영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p> <p>그러나 입학 전에 기업이 폐업되었다면 계약학과 설치·운영의 전제인 대학과 산업체와의 계약이 없어진 상태이고, 계약학과 입학 전으로 학생 신분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학적을 유지할 수 없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26조

과정	㉑-3 채용포기 및 퇴직에 따른 학생보호 [혼합형 계약학과]
Q17	혼합형 계약학과 소속 학생이 채용조건형 과정 이수 후 채용 약정기업으로 취업을 하지 못하거나 채용 약정 기업이 학생의 채용을 거부하였을 경우 학생 신분 유지가 가능한가?
	<p>혼합형 계약학과는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절차에 따라 학생을 선발, 일정 교육과정 수료 후 채용약정기관이 채용을 확정된 경우, 재교육형 계약학과와 직무교육으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과정이다.</p> <p>혼합형 계약학과 학생이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18조에 따라 산학협력법 제8조제1항제1호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채용 약정한 산업체로 채용되지 못해 산학협력법 제8조제1항제2호의 교육과정으로 전환하지 못한 경우의 학생 신분 유지와 관련하여서는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26조 제5항에 따른다.</p>
	<p>✓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25조, 제26조</p>

학과폐지 단계

학과폐지 단계

과정	㉔ 계약학과 폐지계획 신고
Q1	계약학과를 설치 또는 폐지할 경우, 교육부장관의 허가나 보고사항이 있는가?
	<p>계약학과를 폐지할 수 있는 요건은 폐지 예정일 기준으로 신입학생 및 재학생이 0명인 경우로서, 산업교육기관은 계약학과를 폐지하고자 할 경우, 폐지 예정일 2주 전까지 “계약학과 폐지계획 신고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이때 “계약학과 폐지계획 신고서”는 폐지하고자 하는 계약학과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신고서 작성 후 산업교육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제출공문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학협력법 시행규칙 제5조 ✓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10조제3항